

## 취하서

PCT 용도

(앞쪽)

【국제출원번호】

【제출기관】  수리관청  국제예비심사기관

【출원인】

【성명(명칭)】

【주소】

( 【특허고객번호】 )

【대리인】

【성명(명칭)】

【주소】

【대리인번호】

【취하구분】  국제출원  지정국  우선권주장  
 국제예비심사청구  선택국  서류제출서

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.

출원인(대리인)
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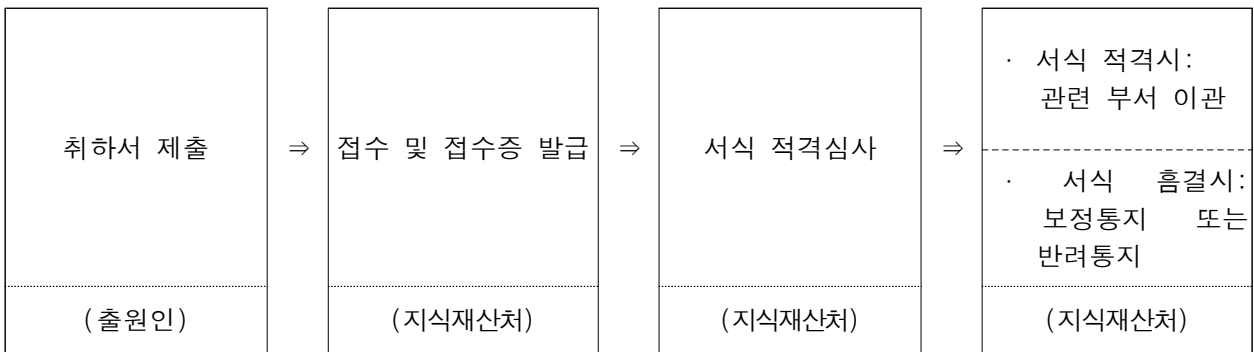
【첨부서류】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(기재요령 제6호 참조)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<sup>2</sup>]

(뒤쪽)

취하구분	내 용	관련 규정
국제출원, 지정국, 우선권주장, 국제예비심사청구, 선택국	국제출원의 출원인이 국제출원, 지정국의 지정, 우선권주장, 국제예비심사청구 또는 선택국의 선택을 취하하려는 경우	「특허법 시행규칙」 제106조의7, 제106조의46 및 「실용신안법 시행규칙」 제17조
서류제출서	일부 누락된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 또는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도면을 서류제출서를 통하여 국제출원 후 제출하였으나 그 서류제출서의 제출을 취하하려는 경우	「특허법 시행규칙」 제100조의2제3항 및 「실용신안법 시행규칙」 제17조

## 2. 처리절차



### ※ 기재요령

#### 1. 【국제출원번호】란

해당 건의 국제출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.

[예] 【국제출원번호】 PCT/KR2007/123456

#### 2. 【제출기관】란

서류를 제출하려는 기관을 선택하여  안에 표시(예: )합니다.

#### 3. 【출원인】란

##### 가. 【성명(명칭)] 및 【주소】

【성명(명칭)]란에는 성명(또는 법인의 명칭)을 적고, 【주소】란에는 주소를 적으며,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서(REQUEST)상의 정보와 동일하게 적습니다.

##### 나. 【특허고객번호】

지식재산처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을 수 있습니다.

##### 다. 공동출원인

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출원서(REQUEST)에 첫번째로 적은 대표출원인을 적습니다.

#### 4. 【대리인】란

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【대리인】란의 【성명(명칭)], 【주소】 및 【대리인번호】란에 각각 대리인의 성명(또는 법인의 명칭), 주소 및 대리인번호를 적고,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며,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서(REQUEST)상의 정보와 동일하게 적습니다.

#### 5. 【취하구분】란

가. 취하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□ 안에 표시(예: ☒)합니다.

나. 지정국 또는 선택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**【취하구분】** 란의 다음 행에 **【취하내용】** 란을 만들어 취하대상 지정국 또는 선택국을 적습니다.

[예] **【취하내용】** 한국, 미국, 일본

다. 우선권주장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**【취하구분】** 란의 다음 행에 **【취하내용】**, **【출원번호】**, **【출원일자】** 및 **【출원국】** 란을 만들어 각각에 출원번호, 출원일자, 출원국을 적습니다.

[예] **【취하구분】**

**【취하내용】**

**【출원번호】** 10-2007-1234567

**【출원일자】** 2007. 1. 1

**【출원국】** 한국

라. 서류제출서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**【취하구분】** 란의 다음 행에 **【접수일자 및 접수번호】** 란을 만들어 취하대상 서류제출서의 제출일자 및 접수번호를 적습니다.

**【취하내용】**

**【접수일자】** 2008. 2. 14.

**【접수번호】** 6-1-2008-0001234-56

## 6. **【첨부서류】** 란

가.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(1) 취하서 1통

(2)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1통(기재요령 제4호 참조)

나. **【첨부서류】** 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,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.

[예] **【첨부서류】** 위임장 1통

다.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(스캐닝)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상도 300부터 400dpi(300dpi 권장)까지의 흑백 TIFF(Tagged Image File Format)로 합니다.

라. 첨부서류를 PDF(Portable Document Format)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